産業團地 入住契約書 (分讓用)

RESIDENCE OF CORRECTIONS



平澤産業團地 管理公團

평택산업단지 입주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 외 1필지

- 부 지 면 적: 14,709.7 m²

- 건 축 면 적: 30,689.83 m²

- 부지 용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

○ 입주업체의 사업계획

| 회 사 명 (법인명) | 주식회사 원익 아이피에스 | 대표자 | 변정우 |
|--|--|-----------|----------------------------------|
| 주 소 (법인은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외 1필지 | 연락처 | 031-8047-7130 |
| 업 종 |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mark>분류번호</mark> 31999/ 운송장치 제조업 | 29271 생산품 | 반도체 제조용 등 기계,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치 |
| 건 물 면 적 제조시설: 6,719.95 m², 부대시설 : 23,969.88 m², 계 : 30,689.83 m² | | | |

위 부동산에 관하여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집"이라 하고 위 부동산을 분양(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포함)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 조항에 합의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회원의 가입)"을"은 입주계약과 동시에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의 회원업체가 되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산업단지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한다)과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정관규약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고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갑"의 지시에 응한다.



- 제2조(처분제한) "을"이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 39조, 령 제49조, 규칙 제37조와 지침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을"이 법제 15조 제 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후 5년이 지나기전에 분양("갑"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양도 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법 제 39조의 2 제 2항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양

도하여야 한다. 단, "갑"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나 법 제39조 제 2항의 유관기관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2. "을"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및 공장등을 제 15조 제 1항 규정에 따라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 5년이 지나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전에 령 및 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처분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법 제 33조 제 5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을"이 입주계약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 36조의 2 에 의거 임대신고서를 "갑" 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제3조(입주계약해지 및 재산의 처분)"갑"은 "을"이 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월 또는 1년 이내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법 제 43조(입주계약해지후의 재산처분 등)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한다.
- 제4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갑"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분양(경매, 기타 법률에 의한 취득 포함)받은 산업용지의 천부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법 제39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 ②"갑"은 산업용지를 환수하기 전에 "을"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시정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 제5조(입주계약변경)"을"이 체결한 입주계약사항중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입주계약변경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새로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제2조 [처분제한] 및 우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①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영제 1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사업 내용
 - ③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 1.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 일 것
 - 2.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시의 공장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 일 것
 - 3. 변경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 8조 제 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 ④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 18조의2 제 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하며, 제 3항 각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6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을"이 법 제38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을 체결하고 법 제15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공장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갑"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7조 (공장등록 사항의 변경)"을"이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사항중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계약변경신청 또는 공장등록변경신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계약변경신청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 신청으로 본다.
 - 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 4. 부대시설면적(법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 5. 세부업종 변경사항
- 제8조 (권리의무의 승계) "을"이 법 제39조에 의한 양수입주나 법 제40조에 의한 경 매등으로 취득 입주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법 제4조, 제10조 규정에 의거 행위의 효력의 승계와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 제9조 (공동부담금의 납부의무) "을"은 법 제37조 및 령48조와 정관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부담금 등의 납부의무를 지니되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리권자의 승인을 득한후 별도 고지키로 하며 "을"은 이를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불이행시 "갑"의 처분에 따른다.
- 제10조 (보고)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공장의 착공, 증축, 준공, 이전 및 가동개시에 관한 사항
 - 2. 생산, 수출, 고용등 공장가동에 관한 사항
 - 3.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
 - 4. 임차업체의 전출입에 관한 사항
 - 5.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지침에 의한다.

제12조 (해석) 본 계약서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추가약정) "갑"은 본 계약서 이외에 "을"이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계약서의 부속으로 별도 추가약정을 받을 수 있다.

위 각조항을 준수하여 향후에 증명하고자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후 각기 서명 날인하여 "갑" "을"이 각 사람씩 보관키로 한다.

型的問題

서기 2016 년 9 월 19일

"갑"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52번길 9 - 6(모녹롱)

성 명: 사단법인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원)

"을"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 외 1필지

업체명: 원익 IPS

대표자 : 변정우



